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할 때의 전자서명수단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인증서로 특정하는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을 통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을 통해 공고한 인증서를 말한다)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

3.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것을”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후견
등기시스템을 통해 공고한 인증서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① (생 략)	제2조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확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전자정부법」 제29조 제5항의 위 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로 한다.	② ----- ----- ----- ----- <u>것으로서</u> <u>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u> <u>후견등기시스템을 통해 공고한 인</u> <u>증서</u> 를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327